

2021년도 제1회 제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

2021년 제1회 제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1년 3월 17일

제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

1

채용분야 및 인원

근무부서	채용분야	채용직급	채용인원	근무기간	담당업무	근무시간
감사법무담당관	법률전문관	행정6급(일반임기제)	1명	3년	○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등 수행 (답변서 검토, 변론기일 참석 등) ○ 시정 현안업무 법률상담 및 자문 ○ 자치법규 제·개정 자문 및 심사 ○ 기타 송무행정 관련 업무 등	주40시간

※ 근무실적평가에 의거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사업의 계속추진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,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

2

임용근거

- 가.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, 제27조
- 나.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, 제21조의3, 제21조의4
- 다.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
- 라. 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

3

시 험 방 법

가. 1차시험 : 서류전형 (직무수행 관련 자격 및 경력 등 심사)

- ※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나. 2차시험

- 1차시험(서류전형) 합격자를 대상으로 함
- 면접을 통해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44조에 따른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평가

▶ (평 정 요 소)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(3점), 중(2점), 하(1점)로 평정

-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
-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
▶ (합격자 결정)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

*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

< 평정성적 순위 >

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'상'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, '상'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'중'의 개수가 많은 사람에게 선순위 부여

< 불합격 기준 > ①, ② 에 해당하면 불합격

-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'하'로 평정
-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'하'로 평정

4

응 시 자 격

가. 기 준 일 : 최종시험(면접시험) 시행예정일

나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) 등 기타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▶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<p>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</p> <p>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p> <p>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p> <p>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</p> <p>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</p> <p>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</p> <p>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p> <p>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p> <p>▶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</p> <p>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</p> <p>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</p> <p>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</p> <p>1. 공공기관</p> <p>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</p> <p>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</p> <p>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</p> <p>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「상법」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·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·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④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2항, 제3항,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</p>

라. 거주지 및 성별 : 제한없음 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마. 연 령 : 20세 이상 (2001.12.31. 이전 출생자)

사. 채용분야 자격요건

채용예정 분야	자 격 요 건
법률전문관	<p>❖ 직무분야 자격 : 「변호사법」 제4조에 정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</p> <p>1.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</p> <p>2.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</p> <p>3.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</p> <p>※ 실무경력자 또는 공공기관 경험자 우대</p>

※ **관련분야 실무경력**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,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 제5항)

※ 「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」에 따라 일반(시간선택제)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

5

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

가. 시험일정

구 분	일 자	장 소	비 고
원 서 접 수	2021. 3. 30. ~ 4. 1.	자치행정과 (인사팀)	방문 또는 빠른등기우편 접수
1차 합격자발표	2021. 4. 5.(예정)	시 홈페이지('채용시험란')	
면 접 시 험	2021. 4. 9.(예정)	추 후 공 고	
2차 합격자발표	2021. 4. 12.(예정)	시 홈페이지('채용시험란')	

※ 상기일정은 부득이한 사정(재공고 등)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사전 개별 통지 또는 홈페이지 공고

※ 면접일시 및 장소는 1차 합격자(서류전형 합격자) 발표 시 공고

나. 원서접수 및 교부

○ 원서 교부 : 제천시 홈페이지 '채용시험'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활용

○ 접수 기간 : 2021. 3. 30.(화) ~ 4. 1.(목) / 3일간

※ 접수시간은 평일 09:00~18:00 <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>

○ 접수 장소 : 제천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(3층)

○ 접수 방법 : 방문접수 또는 빠른등기우편 접수

① 방문접수

-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(09:00~18:00)에 접수 ※ 접수마감일 18:00 이후 원서접수 불가
- 응시원서 제출 前 시청 1층(민원지적과)에서 응시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장

② 등기우편 접수

- 등기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(2021.4.1.)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
 - ▷ 등기우편 접수 시 제출서류 누락 및 미비 등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 책임임
 - ▷ 등기우편접수 시 미비 서류에 대한 보완 제출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므로
 - ☞ 등기우편으로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전화요망
-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
- 봉투 겉면에 '2021년 제1회 제천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' 문구 표기 (응시번호는 이메일로 통보→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의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)
- 등기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의 '통상환증서'로 교환하여 동봉
 - ※ 우체국 통상환증서가 동봉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
- 주 소 : 우)27188,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(천남동, 제천시청) 자치행정과 채용담당자 앞

가. 공통사항

- ❖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및 법령에서 정한 유효기간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
- ❖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❖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반드시 한글번역본(공증필)을 첨부하여 제출
- ❖ 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사용하되,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에 학교명이나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
- ❖ 제출서류는 스테이플러침 사용 없이 아래 순서대로 제출 요망

나. 제출서류 목록 (①~⑩)

-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. (별지 제1호 서식)
- ② 응시원서 1부. (별지 제2호 서식)
- ③ 이력서 1부. (별지 제3호 서식)
- ④ 자기소개서 1부. (별지 제4호 서식)
-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. (별지 제5호 서식)
-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. (별지 제6호 서식)
- ⑦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. (별지 제7호 서식)
-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. (별지 제8호 서식)
- ⑨ 최종학교 졸업(학위)증명서 1부. (해당자에 한함)
 - ※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졸업증명서와 함께 제출
- ⑩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. (필수)
 - 자격요건(변호사 자격)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같이 제출
 - 발급년월일 및 자격증 번호가 선명하게 나온 사본
 -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 갱신 또는 재발급한 자격증 사본
 - 유효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구 자격증 → 최신 자격증 갱신 사본
 - ※ 자격요건 검증을 위해 원본 또는 자격증 발급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
- ⑪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. (별지 제9호 서식)
 - 경력증명서(재직증명서) 인정 요건
 - ☞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여 인정함
 - ☞ 발행기관의 직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
 - ☞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(연월일까지 기재) 및 주당 근무시간, 직위(급), 담당업무 (채용분야와의 업무연계성이 잘 나타나도록 상세히 작성), 발급확인자의 성명과 날인,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
☞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발행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
- *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(주당 근무시간 40시간 미만)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1일, 1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제출 →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 인정
- 프리랜서·자원봉사·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수 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입증자료 제출 (미 제출시 경력 불인정)
-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임용예정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,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임용예정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
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불인정

⑫ **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[경력(재직)증명서 제출자에 한함]**

-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c.or.kr)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(www.ei.go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
-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'보험가입 전체기간' 이 확인 가능하게 발급
-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서류 제출

⑬ **기타 모집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 (연구실적, 상훈 등 관련 증빙자료 1부) (해당자에 한함)**

⑭ **응시수수료**

- 제천시 수입증지 [5급 이상 : 1만원, 6·7급 : 7천원, 8·9급 : 5천원]
-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(1층) 11번 창구 (민원접수)에서 납부
- ※ 등기우편 접수시 응시수수료를 '우체국 통상환증서' 로 교환하여 동봉
- ※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군 수입증지 등은 적용 안 됨
- ※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

7

보수 기준

가.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책정

임용예정 분야	임용 직급	근무시간	연봉액[기본연봉]
법률전문관	일반임기제 행정6급	주40시간	60,700천원

- 나.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- ※ 「고용보험법」 제10조 제1항 제3호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 - ※ 복무는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및 「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준용
 - ※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, 특별한 자격과 직무능력,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정 할 수 있음

8

응시자 유의사항

- 가. 응시희망자는 **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**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제천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.
- 다.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(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)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·결정하며,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라. 또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 **※ 보완서류 제출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.**
- 마.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날부터 15일 이내에 탈락자가 청구 할 경우 반환합니다.
- 바. **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.**
- 사. 또한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것으로 판명될 때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.
- 아.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면접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자. **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및 없을 경우 포함)에는 원서접수일, 시험일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.** (최초 공고 시 응시한 자는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기존 제출서류 효력이 인정됩니다)
- 차.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제천시청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.
- 카. 등기우편접수시 응시번호는 이메일로 알려드리며, 응시표 원본은 1차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(면접)일 당일 현장에서 교부합니다.

타. 시험 및 임용요건에 대한 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채용절차 관련문의 : 제천시 자치행정과 인사팀 (☎043-641-5254)

- 직무분야 관련문의

* 법률전문관 : 제천시 감사법무담당관 의회법무규제개혁팀 (☎043-641-5081~2)

채용 분야별 직무기술서

연번	직무분야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
1	법률전문관	행정6급 (일반임기제)	1명

임용예정 기관명	근무예정부서
충청북도 제천시	감사법무담당관

주요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등 수행 (답변서 검토, 변론기일 참석 등) ○ 시정 현안업무 법률상담 및 자문 ○ 자치법규 제·개정 자문 및 심사 ○ 기타 송무행정 관련 업무 등
-------------	--

필요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공통역량)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공복의식 ○ (직급별역량) 상황인식/판단력, 기획력·팀워크지향, 의사소통능력·조정능력 ○ (직렬별역량) 분석력, 전략적 사고력, 창의력
-------------	---

필요지식	○ 소송, 행정심판 등 법률 관련 전문 지식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채용분야 : 법률전문관					
응시 자격 요 건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 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자격증 (필수 자격요건)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변호사법」 제4조에 정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.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.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관련분야 경력요건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없음 * 실무경력자 또는 공공기관 경험자 우대 </td> </tr> </table>	자격증 (필수 자격요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변호사법」 제4조에 정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.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.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	관련분야 경력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없음 * 실무경력자 또는 공공기관 경험자 우대
자격증 (필수 자격요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변호사법」 제4조에 정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.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.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				
관련분야 경력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없음 * 실무경력자 또는 공공기관 경험자 우대 				